

복지는 교육이다

현장사회복지사들의 열망 보수교육 법제화만이 실현열쇠

| 글 : 박숙미 (socialworker@welfare.net)

복지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복지 예산의 증가로 사회복지분야의 시설 및 인력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및 관련협회에서는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6만 명의 복지인력이 2010년에는 10만명, 2020년에는 25만명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새로운 인력의 양성체계 마련도 중요하지만 확대된 인력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 9월 발표한 2006년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근로자 기초실태조사 1차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261명 중 78.1%(4,888명)가 예라고 답변하는 등 교육훈련의 참여도는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이유로는 교육훈련 기회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5%를 차지해 아직까지도 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종사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 전문 지식과 기술

전문직은 일정 이상의 학력수준과 어려운 자격검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격이 없으면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만이 공유한 지식과 실천기술, 윤리(사회복지사윤리강령)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사회에 봉사하는 서비스의 주체이다. 또 사회복지사는 고도의 윤리적 가치기준과 심리사회적, 생태체계적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람(person in environment)을 관계하는 전문직으로, 사회복지사에게 지속적인 보수 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유지 · 향상과 더불어 사회복지 서비스



의 질적향상, 궁극적으로 국민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의 복지를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NASW,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사업대사전)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 지식과 기술은 '사회, 환경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문제 및 복지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하고 개입기법 및 기술 또한 다양하게 변화 발전' 되어야 한다.

박경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우리 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최근의 욕구는 개별적인 현장능력보다도 실습지도 관련 교육과 자신의 업무에 대해 수퍼비전을 받고자하는 욕구,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킹 관련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전국 각 도마다 지회가 생기고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운영하려다보니 정치적 활동 요령과 리더십에 관한 욕구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장의 욕구를 재빨리 파악하여 생생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어

야겠다”고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협회 등 사회복지계, 보수교육 꾸준히 진행

그동안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사회복지계는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며 보수교육을 실시해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05년 한해 총 68개 과정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6,650명이 전국 16개 지방협회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였다.

교육내용은 예비사회복지사 교육, 신입사회복지사 교육, 경력사

회복지사 교육, 관리자 교육 등 경력과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으로 경력에 맞춘 행정과 실무를 교육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을 담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 노무관리교육, 해외연수, 사회조사교육 등 다양한 이슈와 전문성을 전달하는 특화교육을 통해서는 노무관리,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이해와 도입 등 사회복지계의 이슈를 전달하고 그 안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함께

〈표 1〉 2005년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력 교육실적

구분	과정명
중앙	사이버연수원, 사회복지사해외연수, 사회복지지도자해외연수
	맞춤교육
서울	예비사회복지사 교육, 현장입문 교육, 신입사회복지사 교육, 경력사회복지사 교육(Hot-Project 교육), 관리자 교육 사회복지사노무관리교육, 지방분권화와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조직의 실천사례와 활용, 나의 사상체질과 한방건강테크,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이해와 도입, 사회복지현장에서의 평가
	특화교육/사회복지열린강좌
	특강/세미나/워크샵
부산	사회복지지방이양과사회복지사, 사회복지세미나,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전환과 복지사의역할, 개인비전 · 네트워크 · 유비쿼터스 · 사회복지전문성교육
광주	특화교육
	맞춤교육
대전	해외연수, 노무교육
	사회복지사 슈퍼바이저 교육
	사회복지사 직무향상 교육, 사회복지사 프로포절 교육
	맞춤교육
대구	중간관리자실무연수, 사회복지사 실무교육
	특화교육
	맞춤교육
울산	예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테마기행,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미술치료 초급연수, 2005 사회복지사 현장 레크리에이션 교육
경남	신규 사회복지사교육
경북	사회복지사해외연수
충북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샵
	맞춤교육
전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여성발전기금 교육사업
전북	여성발전기금 교육사업
	제7차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학술대회
제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예비사회복지사교육
	슈퍼바이저교육, 신입사회복지사교육, 예비사회복지사교육
강원	사회조사교육 (spss통계과정), 사회복지상담교육(인테이크, 면접, 전화상담), 사회복지노무교육, 사회복지책무성교육
	맞춤교육
경기	전문사회복지사교육, 예비사회복지사
	사회복지포럼
	맞춤교육
전북	실습수퍼바이저교육
	리더십교육, 디지털영상제작교육, 김제시사회복지사보수교육, 학교사회복지사교육, 치료레크리에이션교육, 군산시사회복지사보수교육
	특화교육
	맞춤교육
제주	새내기, 중간관리자, 관리자, 예비사회복지사교육
	전국사회복지시설순례, 사회복지사 특별교육
	특화교육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관심분야 논문연구발표회, 초청강연회
경기	학교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맞춤교육
	보수교육
	특강/세미나/워크샵
	워크샵, 연찬회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하였다.

2004년 개원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2005년 한해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22개 과정에서 1,129명을 교육하였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의 주요 교육내용은 멘토링코디네이터과정, 노인학대전문상담원과정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 한해동안 2,883명을 대상으로 행정실무과정, 기획력개발과정, 홍보실무과정, 기획행정 과정 등 특정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에서도 종사자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보수교육

은 이들 단체의 교육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즉 교육대상자에 있어 사회복지사를 위주로 한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이 종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꾸준히 보수교육을 실시해 왔다.

타전문직 보수교육 현황

이미 타전문직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대한간호협회가 교육 전반의 심의 관리를 담당하고 전국 17개시도 간호사협회 및 산하단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약사의 경우도 대한약사회에서 위탁하여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표2〉 타 국가자격 보수교육 현황 비교표

구분	간호사	약사
교육 대상수	회원은 10만명 22만5천명이 자격증유 (매년 10만명 이상 교육)	대한약사회 회원 26,581명 -비약업 대표, 유통 대표 등도 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음 (실 교육은 면허 사용자에 한해서만 이루어짐)
관련 법령	의료법 의료법 제28조(협조의 의무)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사법 약사법제13조의2 (연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12.31〉
업무 위탁	대한간호협회 (교육위원회가 교육 전반 심의 · 관리)	대한약사회 시행령제33조 (업무의 위임 · 위탁) ② 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다음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1994.7.7, 1994.12.23, 2006.3.29〉 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교육 실시 기관	1. 중앙회의 17개 시 · 도 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2. 3,4년제 간호교육기관 3. 대학의 부속병원 4. 보수교육 지정기관으로 인정 받은 기관 1) 15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으로서 본회 회원이 60명 이상 재직중인 의료기관 2)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술단체로서 본회 회원이 50% 이상인 학술 단체 5. 기타 본회가 인정한 단체	1. 대한약사회 분회 대한약사회 산하 시도약사회(지부) 분회에서 교육 실시됨 (타기관에 교육 위탁을 맡기거나 타기관 교육을 인정하는 경우 없음)
교육 대상	간호사(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근무하는 자)	약사 ① 약국을 경영하지 않고 취업해 일하고 있는 자는 이동도 심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약사 면허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수교육 관리는 실제로 안됨. ② 면허 취득 후 면허사용 허가를 받은 명단만 복지부에 올려주소 지정화한 시립만 보수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구분	간호사	약사
교육 이수 시간 (평점)	<p>매년 8평점 이상</p> <p>1. 면대면 교육 ① 강좌- 1시간 1평점 ② 실습/워크샵- 1시간 0.5평점 2. 사이버 교육 1시간- 2평점 (교육하한점수는 4평점. 단, 사이버교육은 2평점)</p>	<p>매년 8시간</p> <p>1. 연수교육- 보수교육 2. 보충교육- 보수교육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한 교육 시행규칙제6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p>
방법	<p>1. 면대면교육- 외부기관 위탁(강좌, 실습/워크샵, 학술대회, 기타) 2. 사이버교육- 본회에서 직접 진행</p>	학술대회, 전지연수 등 각 분회에서 자체적으로 방법 결정
내용	<p>커리큘럼 없음. 교육시행기관에 교육내용 자율적으로 맡김</p>	커리큘럼 없이 시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과태료	<p>1.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 미이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2.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차 처분시에는 자격정지 7일의 벌칙조항 있음</p>	<p>1. 약사법제79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4.1.7〉 2.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p>
벌칙	<p>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실시기관 취소, 6개월간의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p> <p>1. 자체강사진 중심의 형식적 교육 2. 허위보고 3. 보수교육을 3년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1차-연수교육 미필자는 분회의 보충연수교육 참여 2차-1차 미필자는 자부의 보충연수교육 참여 3차-2차 미필자는 대한약사회 보충연수교육 참여 3차 벌칙 미필자는 보건복지부에 전달이 되어서 과태료 100만원의 벌금</p>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타 전문분야(간호사, 약사 등)의 경우 대부분이 회원관리를 하고 있는 협회에서 직접 보수 교육을 시행·관리하고 있다.

이는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적합한 보수교육 개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질 높은 보수교육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윤정 대한간호협회 교육팀장은 “회원관리와 보수교육 시행 및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질 높은 보수교육 및 체계적인 보수교육 실시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협회 회원들의 보수교육 경력이 쌓이고 누적되면서 개개인들의 경력 관리가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함께 관리되어 회원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적된 자신들의 경력을 확인 할 수 있게 되고 이 또한 하나의 회원서비스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보수교육법제화, 사회복지계 힘모아야

박신득 강남구가정복지센터 과장은 “보수교육의 법제화를 통해 전문성을 갖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증 남발 또한 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박신득 과장은 이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은 협회의 몫”이라고 지적하였다.

지금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 전문성이라는 큰 기로에 놓여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법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열망은 이제 보수교육 법제화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 시킨 것이 2005년 10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보수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난 4월 제출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상자 관리의 어려움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화원 의원을 비롯한 장향숙 의원, 안명옥 의원, 양승조 의원 등이 보수교육 시행을

지지하고 나섰으며 그 결과 〈표3〉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정부안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0월 2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개발 워크샵을 가졌다. 이날 워크샵에는 협회 교육훈련위원회 위원 및 김명훈 한국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경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산하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보수교육 추진 사항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보수교육 법제화 이후 변화들에 대한 준비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11월 6일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사외 공익이사제 도입이 같이 상정될 예정이다. 보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법안심사소위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사외 공익이사제와 관련해서는

정당 간의 의견 차이도 있으며,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인식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두 가지 법안이 같이 상정된다면, 보수교육도 함께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반드시 두 법안이 분리되어 상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많은 이들의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보수교육이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또 언제 보수교육 법제화의 기회가 우리에게 올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이제 보수교육 시행은 눈앞에 닥쳐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높고도 험하다.

이 높고 험한 산을 넘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 않느냐는 우리 모두의 역할에 달려있다. 사회복지사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보수교육 법제화를 이루어야 한다. SW

〈표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안

현행	정회원 의원(안)	정부(안)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社會福利士의 採用)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3조(社會福利士의 採用) (현행과 같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교육훈련을 이유로 해당 사회복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시설장은 교육훈련을 이유로 해당 사회복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3조의2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8조(과태료) ①제18조제5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8조(과태료) ①제13조제2항·제3항, 제18조제5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8조(과태료) ①제13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